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94
----------	------

2020년 6월 16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5월 22일, 홍성룡 의원 외 11명
- 나.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 다. 상정일자 :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0년 6월 16일 상정, 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홍성룡 의원)

### 가. 제안이유

- '20년 1월 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4.8.)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자금 사용용도를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1)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과 재난계정의 재원에 지방채를 추가함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2) 시설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기금 사용용도를 범주별로 분류하

고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민간분야의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기금 사용용도에 추가함(안 제5조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4.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 개 요

- 본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과 재난계정의 자금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sup>1)</sup>에 따른 지방채를 추가하는 한편,
- ‘20.1.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시행 ‘20.4.8.)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이 열거주의<sup>2)</sup> 방식에서 포괄주의<sup>3)</sup>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자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 구호계정 및 재난계정의 자금재원 추가에 대한 의견(안 제4조)

- 안 제4조는 현행 조례에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과 재난계정의 자금재원을 각각 ‘서울시의 적립금’과 ‘각 계정 자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규정하던 것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지방기금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를 추가 신설하려는 것으로

1)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2) 열거주의(Positive System):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거나 금지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체제

3) 포괄주의(Negative System):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나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체제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 (생략) <div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div>	제4조(구성) ① _____ ----- 1. 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 (생략) <div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div>	② _____ ----- 1. 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

- 「지방기금법」 제6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서, 「지방자치법」 제142조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재난관리기금과 같이 「재해구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 의무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 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사료됨.

4)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한편, 금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당초 2020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 수립 당시 비융자성 사업비로 1,390억원을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 금년 6월 초 기준 재난예방사업 116건에 936억 82백만원, 코로나-19 대응사업 108건에 8,127억 12백만원, '19년도 이월사업 5건에 15억 21백만원을 지출하여 총 9,079억 15백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적립총액)은 470억 66백만원으로
- 이는 2020년 법정 의무예치금 2,602억 48백만원<sup>5)</sup>에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일 신설된 시행령 제75조의2 특례<sup>6)</sup> 적용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5) 의무예치금: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Rightarrow 1,734,984\text{백만원} \times 15\% = 260,248\text{백만원}$$

[03년 이후 최저적립액 현황]

(단위 : 백만원)

합계	'03~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734,984	1,080,681	86,532	90,708	100,500	113,901	126,742	135,920

※ 최저적립액: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

6)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또는 기타 돌발적인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확보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동조항의 개정은 시급하다 할 수 있음.
- 다만, 지방채 발행 이후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 및 이자비용 발생 최소화를 위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상환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되므로 지방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한 별도의 재원 즉, 기금 적립금이 아닌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상환토록 하는 다음 [표]와 같은 추가적인 조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해 보임.

[표] 본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구성)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해구호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적립금 2. 구호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u>&lt;신 설&gt;</u>	제4조(구성) ① ----- ----- 1.----- ----- ----- 2.----- -----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 <u>&lt;신 설&gt;</u>	제4조(구성) ① ----- ----- 1.----- ----- ----- 2.----- ----- 3.----- ----- 4.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다음	②	②

<p>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기본법 제6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시의 적립금</p> <p>2. 재난계정 자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_____</p> <p>_____</p> <p>1_____</p> <p>_____</p> <p>2_____</p> <p>_____</p> <p>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_____</p> <p>_____</p> <p>1_____</p> <p>_____</p> <p>2_____</p> <p>_____</p> <p>3_____</p> <p>-----</p> <p>4.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p>
---	---	--

## ■ 재난계정 자금의 용도에 대한 의견(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재난계정의 자금 사용 용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용도) ① (생략)</p> <p>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p> <p>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p> <p>나.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지역) 제2항에 따른 지역(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p> <p>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p>	<p>제5조(용도) ① (현행과 같음)</p> <p>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 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p> <p>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사업</p> <p>나.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p> <p>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p> <p>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p>

의 설치 및 관리

-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 사. 하천시설·배수관·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 시설의 보수·보강
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 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 다.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서울시설공단 위탁 관리비 제외) 및 임차
  - 라.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진단

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장비구입 포함)
  - 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서울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기타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 나.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 라. 기타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p> <p>8.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건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p> <p>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p> <p>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

- 시행령 개정 전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 각 호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던 반면,
- 시행령 개정 후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을 제외하고 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것과,
- ② 지자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그리고 ③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이 확대되었다 할 수 있으며, 본 개정안은 이러한 기초를 반영한 것임.
- 본 개정안의 재난계정 자금의 사용용도 세부정비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에서 10개의 호로 각 용도를 분류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재난 관리활동’,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기타 긴급대응’으로 3개의 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 다음 [표]에서와 같이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재난계정 자금의 사용용도는 개정안의 사용용도에 모두 포함되고 있어 기존의 재난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용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표] 현행 대비 개정안의 재난계정 자금의 사용용도

현 행(제5조제2항)		개 정 안 (안 제5조제2항)
<b>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b>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	제1호가목
나.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지역) 제2항에 따른 지역(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	제2호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제2호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	제1호나목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	제2호
사. 하천시설·배수관·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	제1호다목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	제1호자목
<b>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b>	⇨	제2호
<b>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b>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	⇨	제2호

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서울 시설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	⇒	제2호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	제1호바목
6.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제1호사목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	제1호가목
8.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제1호마목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	제1호아목
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호

- 참고로, 최근 3년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자금의 사용용도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등에 사용되고 있는 추세임([표] 참조).

[표] 최근 3년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사용용도별 지출내역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백만원)	비율	금액 (백만원)	비율	금액 (백만원)	비율
제5조 제2항	제1호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관련)	5,208	22.4%	14,304	17.4%	17,869	23.5%
	제2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관련)	14,022	60.3%	43,640	53.1%	55,378	72.9%
	제3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관련)	15	0.1%	620	0.8%	279	0.4%
	제4호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관련)	1,702	7.3%	8,557	10.4%	1,853	2.4%
	제5호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관련)	-	-	-	-	-	-
	제6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 이행 주민에 대한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관련)	-	-	-	-	-	-
	제7호 (재난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	-	-	-	-	-	-
	제8호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관련)	2,271	9.8%	478	0.6%	547	0.7%
	제9호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관련)	25	0.1%	10	0.0%	-	-
	제10호 (기타)	-	-	14,547	17.7%	-	-
계		23,243	100.0%	82,156	100.0%	75,926	100.0%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9.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10.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94
----------	------------

제안일자 : 2020년 6월 16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 1. 수정이유

- 개정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신설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 이후 기금운용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상환노력이 요구되며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가능 기한 설정이 필요함.

## 2. 주요골자

- 가.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신설).
- 나.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명시(안 부칙).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구성)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적립금</p> <p>2. 구호계정 자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4조(구성) ① ----- ----- -----.</p> <p>1. ----- ----- -----</p> <p>2. ----- -----</p> <p>3.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4조(구성) ① ----- ----- -----.</p> <p>1. ----- ----- -----</p> <p>2. ----- -----</p> <p>3. ----- -----</p> <p>4.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p>
<p>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기본법 제6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시의 적립금</p> <p>2. 재난계정 자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② ----- ----- -----.</p> <p>1. ----- ----- -----</p> <p>2. ----- -----</p> <p>3.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② ----- ----- -----.</p> <p>1. ----- ----- -----</p> <p>2. ----- -----</p> <p>3. ----- -----</p> <p>4.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p>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
4.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
4.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 나.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 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서울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기타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기타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중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8호”를 “제5조제2항제1호사목”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구성)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제4조(구성) ①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p> <p>4.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p>
<p>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②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p> <p>4.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p>
<p>제5조(용도) ① (생략)</p> <p>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p>	<p>제5조(용도) ① (현행과 같음)</p> <p>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p>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지역) 제2항에 따른 지역(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 하천시설·배수관·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요한 조사·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

2. 서울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 확보 대책사업

다.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서울시설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8.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

람재해위험지구, 기타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기타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  
담 활동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  
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13조(대출조건) 기본법 시행령 제7  
4조제8호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  
·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  
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  
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대출조건) 제5조제2항제1호사  
목-----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  
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